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02

발의연월일: 2020. 9. 8.

발 의 자:서삼석·송갑석·이개호

허 영・임오경・전용기

황 희 • 이형석 • 박 정

박상혁 · 신영대 · 이상직

신정훈 · 윤영덕 · 윤후덕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선박등의 정의를 「선박법」에 따른 선박과 「수상레저안 전법」에 따른 수상레저기구,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만 규정하고 있어 「어선법」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 가하여 선박등의 정의를 명확화·구체화 하고자 함.

또한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 장을 추가하고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경비수역 내 점용·사용 허가권자를 그에 맞게 조정함.

한편, 최근 해양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「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해양테러 대응 주관 기관인 해양경찰청에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, 빈틈없는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 추진을 위해 해군·해양 수산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에서의 대테러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선박등의 정의에 「어선법」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함(안 제2 조제10호).
- 나. 해양경비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(안 제6조제3항).
- 다.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- 라. 경비수역 내 점용·사용 허가권자를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조정함(안 제20조제1항).

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0호 중 "수상레저기구, 그 밖에"를 "수상레저기구, 「어선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, 그 밖에"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"광역시장·도지사"를 "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" 로 한다.

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2(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)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 제10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예방·대응을 위하여 3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양 대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, 특별자치도지사"를 "해양수산부장관,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"선박등"이란 「선박법」	10
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	
(이하 "선박"이라 한다),	
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제	
3호에 따른 <u>수상레저기구, 그</u>	<u>수상레저기구,</u>
<u>밖에</u>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	「어선법」 제2조제1호에 따
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를 말	른 어선, 그 밖에
한다.	
11. (생 략)	11. (현행과 같음)
제6조(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)	제6조(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	③
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	
관, 국방부장관, 경찰청장 등	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	
별시장· <u>광역시장·도지사</u> ·특별자	<u>광</u> 역시장·특별자치시
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	<u> 장·도지사</u>
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

④ (생략) <신 설>

제20조(경비수역 내 점용·사용허 제20조(경비수역 내 점용·사용허 가 등의 통보) ① 해양수산부 장관,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경비수역 사-----에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2(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)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 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「국민보호와 공공안 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』 제10 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 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 적인 테러예방·대응을 위하여 3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 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양 대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 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 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가 등의 통보) ① 해양수산부 장관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

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 략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